

登録商標の 使用 明書와 使用事實을 證明하는 證據物에 關한 基準

特許廳 提供

特許廳은 商標法 시행령 第2條 第2項에 의해 登録商標의 使用說明書와 使用事實을 證明하는 證據物에 關한 基準을 特許廳 告示 第84—17號 (84.8.24)로 告示했다. 84年 9月 1日부터 施行 되는 同告示의 全文을 紹介한다.

1. 등록상표 사용설명서 작성기준

가. 등록상표 사용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등록번호 및 상표견본. 2) 상표사용자 주소. 상표사용자 성명. 상표권자와의 관계 3) 상표를 사용한 상품 4) 상표의 사용시기 5) 상표의 사용장소 6) 상표의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물과 그에 대한 설명

나. 작성요령

1) 등록상표를 2 이상의 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제출할 경우는 각각의 상품마다 작성한다. 그리고 상표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사용한 상표가 연합상표인 경우에는 “상표 등록번호”란 다음에 “연합상표등록번호 및 견본”란을 추가 표시하여야 한다.

3) “상표권자와의 관계”는 “사용시기”의 란에 기재한 시기에 사용한자를 “본인” 또는 “통상사용권자”라고 기재한다.

4) “상표를 사용한 상품명”은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상표의 사용시기”란에는 갱신등록출원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현재사용중”이라 기재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갱신등록출원시로부터 3년 이내중 최근 사용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상표의 사용장소”란에는 영업소, 시장등

지역을 행정구역표시방법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7) “증거물과 그에 대한 설명란에는 사진의 경우는 촬영일자, 촬영자의 주소성명을, 상품견본의 경우는 제조년월일, 제조공장 주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타 자료인 경우에는 자료의 명칭, 자료작성일자, 자료작성자의 주소 성명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서어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은 상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2.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물의 기준

가.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품의 견본

○ 상표 및 상품을 명료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상품의 사진

①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의 사진은 상표 및 상품을 명료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상품의 크기에 비하여 부착된 상표가 왜소하기 때문에 상품의 전체사진으로서는 상표를 명료하게 판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 상품의 전체 사진과 상표가 부착된 부분의 확대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표가 상품에 부착되지 않고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등에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 또는 용기를 통하여 상표 및 상품을 명료하게 판별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한다. 다만, 포장

또는 용기등을 통하여 상품을 명료하게 판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품이 포장 또는 용기등에 들어있는 상태의 사진과 상품만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표가 상품에 부착되어 거래되지 않는 특수한 상품인 경우(예 : 저울에 달아서 판매하는 상품, 날개로 뜯어서 판매하는 상품등) 또는 상품가격표, 정찰표등에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증거물을 통하여 상표와 상품을 명료하게 판별할 수 있고 영업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사진이어야 한다.

3) 상품의 카다로그 또는 상품의 광고물

① 상표가 상품에 부착된 상태로 표시되어 있고 상표 및 상품을 명료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상기의 카다로그 또는 광고물 그 자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카다로그 또는 광고물을 촬영한 사진과 카다로그내용 및 광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용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때에 사진과 사용설명서를 통하여 상표와 상품을 명료하게 판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상품이 영업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4) 상품의 거래서류

상품의 납품서, 송장, 매출매입서 등과 같은 상품에 관한 거래서류는 동 증거물을 통하여 상표와 상품을 명료하게 판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상품을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5) 서어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인 경우

① 서어비스표는 현실적으로 서어비스역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업자 등록인허가증명서, 광고자료 사업장소의 사진 등)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동 자료를 통하여 당해 서어비스업을 명료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업무표장은 현실적으로 업무를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업무경영인허가증명서, 광고자료 업무경영사진 등)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동 자료를 통하여 당해 업무를 명료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단체표장은 이를 상품에 사용하였을 때에

는 상표기준에 준하고 서어비스업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서어비스표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6) 전 1) 내지 5)에 해당하는 증거물일지라도 동 증거물이 특정인만이 알 수 있는 상태로 사용되어진 경우의 것인 때에는 이를 정당한 사용의 증거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 : ○ 동일회사 구내매점내의 거래서류

○ 동일회사 직원용 사보 또는 회보에 자사상표의 광고

○ 회사구내 게시판에 자사상표의 게시

3.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 설명서의 작성기준

가.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상표번호 및 상표전본 2) 상표권자의 주소·상표권자의 성명·통상사용권자의 주소·통상사용권자의 성명 3) 상표를 사용하여야 할 상품명 4)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증거물과 그에 대한 설명

나. 작성요령

1) “상표를 사용하여야 할 상품명”은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증거물과 그에 대한 설명”란에는 자료의 명칭, 자료의 작성년, 월, 일 및 자료작성기관 또는 작성자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면서 불사용에 대한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3) 서어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서식명칭을 변경하여 상표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한다.

다. 상표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의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한 것

2) 타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절차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서 그 사유가 허가 또는 인가기관의 사정에 의한 것

3) 타법령에 의한 그 지정상품의 수입금지, 그 등록상표의 사용금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

4) 화재, 파괴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부 칙

이 고시는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